

대전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8가합102601 판결 [주식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손한수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먼

담당변호사 박영래

변론 종결 2019. 9. 4.

판결 선고 2019. 10. 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67,02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137,02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3,137,021,510원 중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및 D, E, F, G, H, 주식회사 I(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D 등'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주주들이다.나. 피고 B는 2015. 9. 11. 원고 등과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총 3,793,133주)에관하여 매매대금을 300억 원으로 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매매대금)

2. 계약금 및 지급기일 : 2015. 9. 11. 15억 원

3. 중도금 및 지급기일 : 2015. 9. 15. 30억 원

4. 잔 금 및 지급기일 : 2015. 10. 7. 255억 원

[잔금지급기일까지 을(피고 B를 말함)의 실사를 바탕으로 갑(원고 등을 말함)과 합의를 통하여 대상회사(피고 회사를 말함)의 가감된 은행부채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 중 잔금에 가감한다.]

5. 갑은 을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상회사의 부동산에 설정된 J은행의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천안세무서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제3조(주식명의개서)

1. 갑은 을로부터 주식매매잔금을 수령한 직후 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준다.
2. 위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를 완료하고 남은 잔여주식은 을이 2018. 8. 31. (갑의 이월과세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 경과한 직후 갑이 명의개서를 하여 주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기타)

본 계약의 계약금은 E가 B로부터 대여한 금액 중 15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다. 원고 등은 2015. 12. 24.부터 2017. 3. 27.까지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2,338,000주를 피고 B 및 위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D 등이 원고에게 위임한 권한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서 더 나아가 소송의 방식에 의한 매매대금의 청구까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D 등의 위임을 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1)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수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1)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은 원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고, 피고 회사의 건물은 주식회사 I 을 제외한 원고 등이 공동소유 하였다가 2013. 9. 2.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인 사실, D 등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부터 원고에게 위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 등의 각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 등의 각 지분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 내지 원고가 지정한 자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피고 B 또는 D 등이 이와 같은 대금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에 의하면 원고 등이 매매대상인 피고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D 등이 위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령 등을 간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위 계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위임에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등이 위 계약 체결 시부터 향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원고로 하여금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D등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300억 원에서 ① 피고 B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96억 원(피고 B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22억 5,000만 원 중, 송금 후 바로 다시 수표로 교부한 17억 원과 피고 B가 납부하기로 한 세금을 원고가 납부하여 차용금으로 처리한 9억 5,000만 원 상당액은 미지급으로 계산함), ② 잔금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151억 6,700만 원, ③ 피고 B가 대납한 원고 등의 세금 20억 9,597만 8,490원을 제외한 31억 3,702만 1,510원(= 300억 원 - 96억 원 - 151억 6,700만 원 - 20억 9,597만 8,49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지급 금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금 15억 원이 위 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 B가 위 계약 체결 전인 2015. 8.7. E에게 지급한 15억 원으로 대체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 등명의 계좌에 위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07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22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17억 원을 바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기지급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K조합 이목지점, L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6. 1. 5. D 명의 M은행 계좌로 18억 원을 송금한 사실, 위 송금 무렵 피고 B가 원고에게 17억 원을 수표로 다시 돌려주면 조만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D은 같은 날 K조합이목지점에서 액면금액 17억 원, 수표번호 N인 자기앞수표를 발행

받아 피고 B에게 교부한 사실, 위 자기앞수표는 다음날인 2016. 1. 7. 0이 배서하여 최종적으로 L조합에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반환약정에 따라 17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기 지급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가 납부하기로 한 세금 9억 5,000만 원을 원고가 납부하여 차용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24.경 피고 B에게 9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2. 2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송금한 12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대여금의 변제일인 2016. 2. 24. 이전에, 2억 원을 위 변제일 이후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가 위 송금액 122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 또는 지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9억 5,000만 원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나중에 도래한 위 대여금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국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기 지급 매매대금 합계 105억 5,000만 원(=송금액 합계 122억 5,000만 원 - 17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회사의 채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등과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잔금지급기일(2015. 10. 7.)을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은행에 대한 부채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제2조 제4항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9. 11. 및 2015. 12.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회사의 M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152억 8,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B가 대납한 원고 등의 세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2.경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등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및증여세 합계 25억

2,247만 1,76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 일환으로 위 상속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사실, 피고 B가 2015. 12. 23.부터 2017. 6. 28.까지 사이에 위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원고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중 합계 20억 9,597만 8,49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납금 20억 9,597만 8,490원 역시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G의 상속세 3억 4,334만 8,410원이 2015. 12. 23., 원고의 상속세 2억 2,430만 1,970원(가산금 포함 2억 4,448만 9,120원)이 2017. 5. 8. 각각 납부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는 이를 자신이 대납하였으므로 그 합계 5억 6,765만 380원도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상속세를 피고 B가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M은행 계좌에서 2015. 12. 23. 3억 5,000만 원, 2017. 5. 8. 2억 4,448만 9,120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출일 및 인출액수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속세는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피고 B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 및 피고 B가 대납한 세금의 합계액이 279억 3,297만 8,490원(= 105억 5,000만원 + 152억 8,700만 원 + 20억 9,597만 8,490원)이므로,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0억 6,702만 1,510원(= 이 사건 매매대금 300억 원 - 279억 3,297만 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B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중 2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B가 미지급한 매매대금 31억 3,702만 1,510원 중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7. 3. 7. '25억 원을 2017. 3.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 한다), 현재 원고가 위 변제각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제각서 상의 25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피고 B가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계액과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만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의사였다면 미지급 매매대금이 아니라 25억 원을 특정하여 이에 대해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변제각서의 가운데 부분에 간인이 찍혀 있어 다른 문서와 일체로 작성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동일한 문서를 2부 작성한 후 간인을 하였다면 좌측 또는 우측 모서리 부분에 간인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③ 이 사건 변제각서의 글자체, 글자크기, 서명·날인의 위치 등 작성형식이 천안세무서에 제출된 납부계획서(을 제9호증의 1)의 작성형식과 일치하는 점, 4 이 사건 변제각서 및 위 납부계획서는 2017. 3. 30.까지 금원을 지급한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변제각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1)항에서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중 25억 원을 피고 B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각서는 위 납부계획서와 일체로 작성되어 천안세무서에 제출된 문서로서, 원고 등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피고 회사가 조속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박지은, 판사 이성열

1) 법률 제10924호(2012. 7. 26. 시행)로 개정되면서 제6조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다.